

食品衛生法改正에 바란다

- 問題點 및 改善方向 -

김 영 한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1. 서 론

食品衛生法은 1962년 法律第1007호로 制定되어 1991년까지 여덟번이나 改正을 거듭해 현행은 全文80條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식품을 製造·加工하거나 또는 調理販賣하는 營業 및 營業者에게 관련된 사항으로서 生產者에게 義務를 賦課하거나 생산자의 創意와 權利를 制限하는 부분이 많아 식품산업 발전에 沮害要因이 되고 法令의 運用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가 提起되고 있어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改善의 方向을 模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초 이 법의 立法目的은 식품으로 인한 衛生上の 危害를 防止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向上을 圖謀함으로서 国民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이 이 법의 精神인 바 立法目的에 따라 製品인 食品으로 因한 위생문제와 식품의 營養學의 문제로서 国民보건 增進에 헌신해야 할 主體는 바로 食品產業에投身하고 있는 從事者들인 것인 바, 이들

로 하여금 自己가 製造販賣한 製品에 對해 스스로 危害를 防止하도록 責任을 賦與하고 영양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보건증진에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產業의 與件을 充足해 주는 것이 国民보건 향상과 社會發展에 도움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產業環境은 괄목하리 만큼 急變하고 있어 產業別 專門人力의 創意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要求되고,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KNOW HOW를 最大한 活用해야 할 產業雰圍氣 조성만이 國제경쟁에서 生存할 수 있는 길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와 行政제도가 產業의 沮害要因으로 잠재해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절대로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의식구조 개선에도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식품산업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식품의 管理體系를 行政 편의의 규제 중심에서 生產者의 自律管理體系로 전환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몇몇 문제부분을 事項별로 열거해 볼가 한다.

2. 食品營業 許可에 관한 事項

食品營業 許可是 영업의 種類別로 食品製造·加工業이 과자류·제조업을 비롯하여 食品加工業에 이르기까지 27개 業種으로 分類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食品運搬業, 食品小分·販賣業, 食品保存業, 容器·包裝類 製造業, 食品接客業 및 食品調理·販賣業으로 영업의 종류가 분류되어 있어서 產業分類體系上 결합없이 분류돼 있으나 그 分類基準이 施設基準에 의한 것으로서 오늘날은 시설기준이 自動化 System으로 팔목하리 만큼 급변하고 있는 時點임을 감안해 볼때 관련제도가 시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기준적용은 가급적이면 伸縮性있게 운영함이 필요한 조치이고, 영업의 종류 또한 현실에 비추어서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特히 食品의 製造·加工 분야에서는 제품생산에 앞서 반드시 管轄 許可機關으로부터 品目製造許可 또는 品目製造申告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行政的 측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행정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고, 식품산업 활동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업무의 複雜性과 非能率을 초래하게 되고 허가기관 및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생산자의 創意가 좌절되어 크고작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시의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이 制度가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경제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의 食文化 形態는 地方에 따라 特性이 있어 가정과 주부들에 의해

제각기 個性이 다른 솜씨의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었던 것인 바 과학화된 근대사회에서는 주방이 아닌 방대한 규모의 생산공장과 주부가 아닌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확보한 巨大한 經濟實體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식품산업이 유구한 食品文化의 전통을 이어 받아 좋은 食品을 개발해 豐足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하고 또 국제경쟁에 對應해 나가도록 시대에 落後된 제도는 그때그때 서슴없이 개선이 나가는 것만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行政制度의 刷新策이라 하겠다.

3. 食品의 基準·規格에 관한 事項

식품위생법에는 식품등의 取扱에 관한 규정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은 깨끗히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식품이 생산과정에서 부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생적으로 잘 제조되어 商品化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운반, 저장, 진열등 취급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취급된 것이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취급단계별 취급상태는 차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로지 당해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에게 만이 그 책임이 전가되는 등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국민의 위생의식이 희박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비생산적인 알력이 형성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식품관리체계를 생산자 및 취급자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食品 또는 添加物은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保存方法에 관한 基準과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해 놓은 食品公典과 添加物公典이 있어서 水分, 蛋白質 등에 대한 品質基準과 重金屬, 殘留農藥, 微生物에 대한 衛生基準이 있기는 하나 食品의 安全性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그 이외에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당수의 식품은 그 제조, 가공하는 營業者로 하여금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自家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自家規格을 국가가 인정하는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친 다음 당해 식품 또는 첨가물의 基準과 規格으로 인정하고 있어行政의으로는 동일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마다 같은 自家基準과 規格을 받게 하는 등 행정이 반복되어 불필요한 행정인력과 많은 시간이 허송되고 있으며, 식품산업적 측면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되므로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제품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식품공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그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큰 것이므로 식품의 品目製造許可 및 基準·規格管理體系를 原料의 成分規格 등 非效率的인 部分의 규제 위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계,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을 망라한 전문인력 집단으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기구를 통해 有害物質管理System으로 전환해 나가야 良質의 식품을 시의적절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 국제화 조류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품공전체계는 주원료 성분 배합기준에 역점을 둔 非效率的인 기준·규격체계이므로 이를 一新하여 산가, 과산화물가 및 항생물질 등의 미생물 규격을 보완하여 위생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성분배합기준은 伸縮性있게 운영하여 原料使用幅을 확대해 製品開發이 促進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가공식품중에는 당류, 유가공품, 두부류, 식용유지, 인스탄트면류, 인스탄트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첨가물, 동·식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수입식품 등에 있어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제조, 가공,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自家基準과 그 成分에 관한 規格을 定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國家検査機關의 人力難과 業務의 過重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企業은 같은 제품을 제조회사마다 또는 輸入者마다 有效成分, 含量, 硫素, 重金屬, 타르색소, 甘味料, 大腸菌 및 一般細菌 등의 規格을 정해야만 함으로써 식품의 규격관리가 千態萬象으로 되어 通商關係와 民怨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FAO/WHO의 기준·규격에 準하도록 전환해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固體食品, 液體Food, 調味Food으로 大別하여 一般Food의 成分規格을 準用해 나가도록 簡素化해야 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4. 食品의 表示基準에 관한 事項

식품의 表示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表示事

項別로 일반사항과 품목별 공통사항 및 品目別個別事項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사항으로 인한 是非가 발생하고 生產者와 消費者的見解 差異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過敏하게衝突해 國力이 消耗되고 있어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食品에 있어서의 表示事項은 製品生產에 隨伴된 必須要素이므로 行政刷新次元에서 生產者가 消費者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 또는 消費者가 商品選別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必須的으로 表示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判別에 雜多한 사항은 再整備함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消費者保護法과 環境關聯法 등 他法令의 제정 시에는 食品衛生法에서 一絲不亂하게 규정해 놓은 표시사항 및 기준의 일반사항과 품목별 공통사항중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및 품목제조허가번호, 중량·용량 또는 개수, 원료명 및 함량, 보관상주의사항, 반품 또는 교환, 사용 또는 보존기준, 표시된 양과 실제양과의 허용오차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범위 등에 대해 국민인 소비자가 꼭 알아 두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法令의 重複됨을 피해야겠고, 일반국민이 식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하도록 食品衛生法을 健全하게 育成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5. 食品衛生管理人에 관한 事項

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한 규정은 食品衛生法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에는 食品製造業, 食品加工業 및 添加物製造業者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資格基準과 職務의 範圍가 정

해져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규칙에서 教育對象者와 教育實施機關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인 수와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 놓았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원동력은 식품위생관리인의 역할 중대에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는 尖端工業化를指向해 尖銳化하고 있으며 법의 규정 이전에 기업은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1950년대와는 달리 식품분야의 人力水準은 專門 Group別로 飽和狀態에 이르렀고 또한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식품산업의 현실은 옛날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 경영조직의 多元化에 따라 各個部署組織에 전문 식품위생관리인의 역할을 필요로 함에도 아직도 형식적이고 요식에 따른 管理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식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사람이 먹는것을 제조하는 산업인지라 사용하는 원료에서부터 부자재에 이르기까지 위생상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고 제품화한 상품도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인지流通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제작기 막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各部署의組織內에 專擔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의 역할이 매우 重要的한 것임을 재인식하고 기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人事管理施策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식품위생관리인의 實相은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문제점을 열거하고 우선 몇가지 改善方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기업과 식품위생관리인 선임기관은 유자격자를 엄격히 가려서 선임한 후 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 기업에 취업 및 선임된 식품위생관리인은 職務에 充實하기 위해 關係規定을 熟知해야 함은 물론 從事者를 指導할 수 있는 能力を 배양해 나가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는 경우 그 갈음 기준이 모호하여 무자격자가 식품위생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식품위생관리에 맹점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資格基準을 實效性있게 再檢

討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영업허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도 당해기관의 職種이 專門化되어 있지 못하고 專門知識이 결여되어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行政要員의 人力水準을 資格要件이 갖추어진 專門人力 水準으로 교체하던가 중앙의 교육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위탁해 모든 식품위생관리인은 해마다 행정 및 품질관리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교육의 質을 높여 나갈 것을 바라는 바이다.

